■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1. 7. 13.>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 I .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 I 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 I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J] -7 2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제조소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일반취급소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별표 13 V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ال في ال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옥내	저장하는 것은 제외)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
	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탱크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
	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비타버스크보다 테그 어뢰이 사다까기 누시기 ( 시사이 거(케C로 이치므ㅇ 기
탱크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저장소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
	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저장소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저장소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 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 I 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	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 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건물 또는	6m 이상인 단층 다른 용도의 부분  축물에 설치한 옥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저장소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유황만을 저장 취 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지 중 탱 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옥외 탱크	것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는 분말소화설비)
저장소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내	유황만을 저	· 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탱크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저장소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	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 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암반 탱크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저장소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비고

-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수 있다.
-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 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구 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레고 A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제조소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	별표 16 Ⅱ·Ⅲ·Ⅳ·Ⅴ·Ⅶ·Ⅸ·Ⅹ 또는 X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단층건물 이외의 것
	별표 5 Ⅱ 또는 IV제1호의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옥내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옥외저장소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
	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바가트러비이 계세 다레 기초마 그 바이 고치마 미 이천마시 표착라므로
옥외저장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
주유취급소	대영구중역소와기를 설시하고, 당해 귀심물의 소료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판매취급소	당되는 등학단위의 조정구동적조와기능을 설치할 것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옥내탱크저장소	대형무중취소와기 및 조형무중취소와기능을 취취 1개 이경 설치할 것 

비고

-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기타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에 그 도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난이					
巨七月日工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모든 대상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유황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 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III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키도키 Q & 최기	이산화탄소 3.2킬로그램 이상								
이중영크시경소	[사동사용도와기 	- 2개 이상								
		(CF <sub>2</sub> CIBr) 2ℓ 이상								

			1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CF <sub>3</sub> Br)
				2ℓ 이상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
				(C <sub>2</sub> F <sub>4</sub> Br <sub>2</sub> ) 1ℓ 이상
				소화분말 3.3킬로그램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마른모래 150ℓ 이상
			또는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ℓ 이상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
				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
ユ	밖의	제조소		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
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
				으로 족하다

비고: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소화설비의 적응성

						대상돌	는 구분	-				
			제:	l류	제2류			제3류				
			위학	덤물		위험물	<u>!</u>	위학	험물			
소화설비의 구분	건축물 · 그 밖이 공작물	전기설비	아마카막리 그머수 「과 사사화 머리니>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그모수 서오 말을 품	그 밖의 것	제 4 류 위점물	제 5류 위원물	死の岸 守紹児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 비	0			0		$\circ$	0		0		0	0
스프링클러설비	0			0		0	0		0	Δ	0	
물분무소화설비	0	0		0		0	0		0	0	0	0
포소화설비	0			0		0	0		0	0	0	0

	불활	성가스소화설비												
물	할로	겐화합물소화설비		0				0				0		
분 무 능	분말	인산염류등	0	0		0		0	0			0		0
소 화 설	소 화	탄산수소염류등		0	0		0	0		0		0		
別	설 비	그 밖의 것			0		0			0				
	봉상	- 수(棒狀水)소화기	0			0		0	0		0		0	0
	무상수(霧狀水)소화기		0	0		0		0	0		0		0	0
대	봉상강화액소화기		0			0		0	0		0		0	0
형 ·	무상강화액소화기		0	0		0		0	0		0	0	0	0
소	포소화기		0			0		0	0		0	0	0	0
형 수	이산화탄소소화기			0				0				0		Δ
동	할로겐화합물소화기			0				0				0		
식 소 화	ны	인산염류소화기	0	0		0		0	0			0		$\circ$
기	분말 소화 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0	0		0	0		0		0		
	,	그 밖의 것			0		0			0				
	물통	또는 수조	0			0		0	0		0		0	0
기	건조	사			0	0	0	0	0	0	0	0	0	0
타	팽창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0	0	0	0	0	0	0	0	0	0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방사밀도(ℓ/m²분)		
살수기준면적(m²)	인화점 인화점		비고
	38℃ 미만	38℃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을 말하고, 하
279 미만 279 이상 372 미만 372 이상 465 미만 465 이상	16.3 이상 15.5 이상 13.9 이상 12.2 이상	12.2 이상 11.8 이상 9.8 이상 8.1 이상	나의 실의 바닥면적이 465㎡ 이상인 경우의
			살수기준면적은 465㎡로 한다. 다만, 위험물
			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밀도는
			8.2 ℓ/m²분 이상, 살수기준 면적은 27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 인산염류등은 인산염류, 황산염류 그 밖에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한다.
- 3. 탄산수소염류등은 탄산수소염류 및 탄산수소염류와 요소의 반응생성물을 말한다.
- 4.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 5.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 \text{m}^2$ 를 1소 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 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轉用)물통	8 ℓ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 l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 ℓ	1.0

-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 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 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 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한다.
  -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 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 \text{kh} (\text{M4호 비고 M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math>50 \text{kh}$ )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 \ell (\text{M4호 비고 M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math>56 \ell$ )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아.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가)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 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m²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혜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혜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kb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자.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 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목1)의 규정을 준용할 것
-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차.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1)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하 "방호구역"이라한다)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 2)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혜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 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 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 3)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4)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파.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 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 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 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1, /11/11/11 0 2	도 설지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경보설비
구분	최대수량 등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ul> <li>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li> <li>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li> </ul>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옥내저장소	<ul> <li>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li> <li>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li> <li>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li> <li>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li> </ul>	자동화재탐지 설비
다. 옥내탱크저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제41조제	자동화재탐지
장소	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	설비
라.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 설비
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ul><li>· 자동화재탐 지설비</li><li>· 자동화재속 보설비</li></ul>
바. 가목부터 마 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자 동화재탐지설 비 설치 대상 제 조 소 등 에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 보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 상 방 송 설 비 중 1종 이상

해당하지 않	
는 제조소등	
(이송취급소	
는 제외한다)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IV 제14호에 따른다.

-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운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 Ⅲ. 피난설비

-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